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4. 23 선고 2023가합30396(본소), 2023가합30402(반소) 판결
[공사대금 · 사용승인신청서류 인도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11. 14 선고 2024나1120(본소), 2024나1137(반소)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4. 23 선고 2023가합30396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종길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진기, 양창호
변론종결 2024. 3. 26.
판결선고 2024. 4. 23.

주문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인도하라.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7,350,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21. 3. 16. C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경주시 D 소재 “경주 E 공장건설 중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1. 3. 24.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 C주식회사

O 도급공사명 : 경주 E 공장건설 중 건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경주 E 공장건설 중 건축공사(철골 및 판넬공사)

3. 공사장소 : 경주 E신축공장내

4. 공사기간 : 착공 2021년 3월 23일

준공 2021년 8월 10일

5. 계약금액 : 2,392,500,000원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금

(1) 매월 1회

(2)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100%

다.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진행 및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21. 4. 15.부터 2021. 7. 5.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부분 포함)으로 합계 2,185,149,12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계약이행 촉구 및 하도급계약 해제통보

피고는 2021. 7. 18.부터 2021. 8. 31.까지 원고에게 9회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공사 관련 문제점의 시정 및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진행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1. 8. 31. 원고에게 ‘피고가 수차례 공문을 보냈음에도 원고가 회신을 하지 않고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아 현 상황부로 계약종료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공문을 보냈으며, 위 공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시정명령

한편 C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았으나, 경주시는 2023. 3. 8. C와 피고에게 2023. 9. 29.까지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1)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23억 9,250만 원의 일부인 2,185,149,120원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7,350,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공장동 판넬공사 일부, 경비동 판넬공사 등 미시공된 부분이 있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1)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참조). 그리고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21. 8. 31.자 피고의 해제통보에 따라 그 무렵 해제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피고측 현장대리인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만료일 전날인 2021. 8. 9. 외벽판넬 중 일부가 설치되지 않은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1. 7. 18.부터 2021. 8. 31.까지 원고에게 9회에 걸쳐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공문에 ‘Y2열 외벽판넬 미시공’, ‘AL SHEET 미설치’, ‘경비동 판넬 미시공’ 등 이 사건 하도급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미시공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다.

② 특히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만료일 전날인 2021. 8. 9. 발송된 외벽판넬 미시공에 관한 공문에 대하여 원고는 ‘판넬 미시공으로 인한 문제점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공정 진행 시 발생될 문제점을 인지하여 시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판넬 마감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3회에 걸쳐 기성내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최종 작성된 3회 기성내역서에는 잔여 공사부분으로 공장동 AL SHEET 판넬 설치(주출입구 캐노피, 기동, 공장 캐노피, 주출입구 자바라 게이트 하우징 부분), 경비동 판넬공사 등이 특정되어 있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공문에 기재되어 있는 미시공 부분과 동일하다.

3) 나아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 못한 채 일부만 완성된 경우 그 보수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총 도급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기성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2,185,149,1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진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고 및 그 기성고에 따른 보수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위 돈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신축의 공사도급계약은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수급인은 공사를 완료할 의무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수급인에게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요구된다고 객관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된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하수급인인 원고는 하도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이에 협조할 부수적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서류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서류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1) 건축법상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건축법 제22조 제1항),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하며(건축법 제22조 제2항), 건축주는 위와 같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건축법 제22조 제3항). 또한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나아가 그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이와 같이 건축주는 신축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된다.

2) 복합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사용승인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복합자재란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뜻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판넬은 복합자재에 해당하고, 원고는 복합자재의 유통업자, 피고는 복합자재의 공사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경주시는 2023. 3. 8. C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제5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일부 누락된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이유로 동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로서 2023. 9. 29.까지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는바, 이 사건 서류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라고 판단된다.

4) 공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부수적 의무로서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해 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의무라고 보아야 하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참조). 따라서 공사가 중단되어 해제된 경우라도,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과 관련된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21. 8. 31. 피고의 의사에 따라 그 무렵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이 사건 서류와 관련된 판넬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이 사건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가집행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준, 판사 최경은, 판사 임세영

별지